

목 차

■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Executive Summary	1
1.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2
2. 경쟁 질서 저해요인과 해결 방안	4
3. 경쟁 질서 확립 방안	7
4. 법제도 선진화 방안	10
< 토론 >	14
■ HRI 경제 지표	38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 시스템이 선진화 되어야 함
-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이루기 우리 경제의 기본 질서인 시장 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 원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어 온 기구임

□ 경쟁 질서 저해요인과 해결 방안

- **경쟁 질서 저해요인** :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은 ① 개별 시장에 있어서 독과점, 기업결합, 카르텔 등, ② 대규모 기업 집단과 그 계열회사의 불합리한 유대관계, ③ 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의 불완전성 등을 들 수 있음
- **해결 방안** : 공정거래 관련 제도 절차의 선진화, 민간 주체들이 경제 질서의 기본법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의 예측가능성 확보

□ 경쟁 질서 확립 방안

- **경쟁의 의미에 대한 재고찰** : 경쟁의 부정적 어감을 극복하고 상생의 긍정적인 어감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음
- 親경쟁적, 親시장적 정책을 통해 경쟁을 존중하고 경쟁을 선호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립적 역할**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법제도 선진화 방안

- **법제도 선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문제**: 법제도 전반의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 포스 (TF: Task Force) 운영, 출자총액제도에 대한 대안 모색 및 규제 완화가 절실함
- **경쟁 제한적 제도와 관행 타파** : 선진화를 위해서는 경쟁 제한적 관행을 버려야 함
- **소비자 보호 업무**: 소비자가 시장에서 주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경쟁 질서와 소비자 정책 관계가 유기적으로 보완되어야 함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 출처 : 한경미래니엄포럼
- 일시 : 2006년 5월 24일
- 연사 :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주최 : 한국경제신문,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제 발표

1.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제가 공정거래법운영 혹은 공정거래법정책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원과 지지와 협조를 구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을 한 것이 3월 16일이고 두 달이 지났는데 많은 분들이 “어려울 때 오셨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려울 때라기보다 중요할 때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보면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하는 것 같은데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경제시스템이 선진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를 경제 질서의 기본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할 수 있게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말입니다. 또 그렇게 할 만큼 여러 가지 여건도 성숙 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래서 잘 하면 시장경제질서를 바로잡고 그렇게 해서 선진국으로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쪽 분야 공정거래법분야를 계속 연구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제가 오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쓴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비판도 하고 고언(苦言)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공정거래법 15주년 기념식 때 공정거래 15년을 평가해 달라 해서 그 때 남의 생일잔치에서 고언을 하는 게 옳을까 상당히 주저하면서도 고언을 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고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김민호 위원장이었는데 제가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오고 난 뒤에 25주년 기념행사에 제가 취임하기 전에 김민호 위원장이 와서 얘기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묘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저런 생각들을 한 번 구체적으로 현실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해서 저는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제가 다시 한 번 국가에 봉사한다, 군대에 소집되어 온 것 같다는 그런 느낌으로 3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3년 지나면 제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경제시스템이 선진화가 되어야 하는데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장경제를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면 시장이 작동이 되어야 하는데 시장이 작동하려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것을 위해서 설립되고 운영되어온 기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존재의의는 경쟁질서 확립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 경쟁 질서 저해요인과 해결 방안

■ 저해요인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개별시장에 있어서 독과점, 개별시장에 있어서 기업결합, 개별시장에 있어서 카르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개별시장에 있어서 경쟁자적인 구조나 경쟁자적인 행태들을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는 특유하게 대규모 기업집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대규모 기업집단이 계열회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데 그 계열회사가 소속한 시장에서 보면 개별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집단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망할 기업인데도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망하지 않고 또 품질이나 가격이 다른 경쟁업체보다 낫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계열기업이기 때문에 사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개별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대규모 기업집단 시스템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개별시장에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나 기능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게 두 번째 관심입니다.

세 번째로 정부 규제완화를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법과 제도 중에 경쟁제한적인 법과 제도는 해소되었다고 보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규제들이 물밑으로 잠적해 가지고 규제들이 완전히 없어져야 하는데 없어진 것이 아니라 숨어 들어가 있는 그런 규제들이 많이 있어서 여전히 개별시장이 제대로 경쟁 질서를 기본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정부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특히 종래에 규제 산업으로 알려져 있던 방송, 통신, 에너지, 금융, 보건, 의료, 교육 이런 분야가 사실은 아직도 경쟁원리가 작동되지 않고 있

습니다. 이런 분야에 어떻게 하면 경쟁제한적인 요소들을 해소하고 제거하고 해서 경쟁원리가 전 분야에 작동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를 비롯한 우리 공정거래 위원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열심히 추구하려고 하는 목표입니다.

■ 해결 방안

우선 이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관련법을 조금 선진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다듬어 오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규정이나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를 해보자 선진국 수준에 맞게끔 한번 제도와 절차를 선진화시키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경제 질서에 관한 한 공정거래법이 헌법입니다. 경제헌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헌법이라기보다 경쟁정책의 도구와 수단 아니냐는 정도로 인식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질서의 기본법으로서 실효성을 제대로 갖게 하자는 생각입니다. 이 법이 법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 법대로 적용되고 또 수범자 입장에서는 법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측 가능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오고 나서 강조하는 얘기가 경쟁질서라는 얘기를 강조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자꾸 경쟁정책이라고 고쳐 쓰더라고요. 경쟁정책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정책하면 상당히 제한하는 의미로 들리고 법하면 따분하고 갑갑하게 들리고 그러나 봐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중요한 것이 경쟁법이 경제 질서 기본법이라면 그 내용이 명확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되고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법 운영이 상당히 정책적인 접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범자 입장에서 보면 예측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게 아닌가 라도 생각합니다.

제가 11년 전에 서울대학에서 공정거래법 연구과정을 개설을 했었는데 처음에 개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하고 법원, 검찰, 변호사 여러분하고 기업의 공정거래담당 임직원들 이렇게 모셔서 하자고 했더니 반응이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은 우리가 전문가인데 누가 우리를 가르친다고 하나 라는 생각이고, 법원, 검찰,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교수들이 뭘 우리를 가르친다고 하느냐 기업에 있는 분들이 공정거래야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서 보면 되지 무슨 학교에 가서 하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났는데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준비도 없고 가르칠 생각도 없다. 잘난 사람들끼리 모아 놓고 얘기를 한 번 시켜보려고 한다. 내가 대화의 장을 마련할 테니까 얼마나 잘났는지 겨뤄보자.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해서 모셔놓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첫날 입학식을 하는데 각각 소개를 시켰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기업에서 온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공정거래법이 지뢰밭 같아서 어디를 밟으면 터지는지 몰라서 여기 와서 배우면 어디는 밟으면 되고 어디는 밟으면 안 되는지 알까 싶어서 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옆에 지금도 현직국장으로 있는 분인데 당시 과장이었는데 마이크를 받더니 “공정거래법. 이것은 도로의 중앙선 같은 건데 이걸 자기들이 잘 못해서 넘어가서 다치고서 자기 잘못인지도 모르고 지뢰밭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첫 입학식 때부터 논쟁이 시작이 돼서 한 학기 내 논쟁을 해서 때로는 얼굴도 붉히고 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정거래법이 경제 질서의 기본법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런 것이냐 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고 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그 과정을 시작한 것이 정말 잘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보니까 핵심 간부들은 그 과정을 거쳐 온 분들이어서 만약 안 했으면 제가 외부에서 왔다고 얼마나 괘시 했을까 싶은데 지금 다들 적어도 한 학기는 배운 제자들이라서 빨리 익숙해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도 저는 공정거래법은 경제 질서의 기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본법으로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가능성이 있도록 분명하게 지켜야 한다. 다만 지킬 수 있도록 예측가능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얘기, 질서라는 얘기를 강조하게 될 겁니다.

3. 경쟁질서 확립 방안

■ 경쟁의 의미에 대한 재고찰

경쟁원리가 우리나라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경쟁원리가 모든 분야에 적용되지 않고 일정한 분야에는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은데 어느 분야에 가보면 전혀 경쟁이 안 되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 능하면 경쟁원리를 확산시켜나가는 작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것을 경쟁주창활동이라고 하던데 그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경쟁이 중요합니다. 시장경제를 하려면 경쟁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인식이 모든 분야에 확산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경쟁하면 그렇게 제한적인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어떠십니까? 여기 계신 리더들은 경쟁에서 대충 이긴 분들이니까 경쟁 그러면 긍정적으로 옵니까? 제가 경험에 비추어 보면 경쟁 그러면 조금 피곤하고 차가워 보이고 왜 따뜻하게 협력하고 살 수 있는데 무슨 경쟁이냐 이런 느낌이 우리 문화에 널리 뿌리내려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심하느냐 제자 중에 어느 대학 경쟁 법 교수를 하는 친구인데 박사과정을 하면서 세미나를 끝나고 저녁식사 자리에서 분위기가 편안해 지니까 “선생님 우리가 꼭 경쟁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왜?” 그랬더니 경쟁하지 않고 오순도순 어울려서 따뜻하게 살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 좋으라고 경쟁하는 줄 알아” 그랬습니다. 경쟁은 경쟁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피곤한 제도이지만 상대방 좋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쟁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경쟁의 피곤함으로부터 도망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텔도 하고 경쟁을 없애려면 독점이 좋으니까 독점도 하려고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 기업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적 차 원에서는 경쟁질서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시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쟁문화가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경쟁보다는 협력이, 경쟁보다는 협

동이 더 중시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다른 측으로 가 보면 경쟁하자고 하면 전쟁까지 갑니다. 경쟁하고 전쟁이 구별이 되지 않는 문화는 참 묘한 문화입니다. 경쟁하자고 하면 죽기 살기로 해서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된다는 식이라면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은 전쟁도 아니고 경쟁이 갖는 긍정적 기능을 살려내면서 경쟁에 친한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가 철학을 하고 미학을 하는데 “경쟁이라는 단어를 바꿔보세요. 전쟁과 경쟁의 ‘쟁’ 자가 같아서 그런 것 아니야? 다른 좋은 말로 고쳐서 쓰면 어떨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경쟁이 전쟁과 같은 느낌이 주어지지 않는 다른 어떤 말로 바꿀 수는 없을까 하고 생각될 정도로 우리나라는 경쟁 개념이 친하게 오지 않는다는 이 측면이 극복 되어야 되지 않느냐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친기업적입니까, 반기업적입니까 하고 묻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업인들을 상당히 존경하고 존중하는데 말하자면 저는 친경쟁적이고, 친시장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기업이나, 반기업이나는 말할 수 없지만 스스로 보면 기업인들 입장에서 친경쟁적인 기업들은 저보고 친기업적이라고 할 것이고 반경쟁적인 기업들은 저보고 반기업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기업, 반기업보다는 친경쟁적, 친시장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경쟁이라는 말이 느낌이 없으니까 친경쟁적이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들릴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있었습시다만 그런 문화적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경쟁질서가 기본질서로 자리 잡으려면 경쟁을 존중하고 경쟁을 선호하는 문화들이 정착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립적 역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격차가 심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성장은 되는데 고용은 안 된다는 것이 또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이 문제와 관

런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혹은 경쟁 질서를 보호하는 부서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망할 자는 망하게 하는 게 원칙적으로 옳습니다. 옳지만 경쟁자가 없으면 경쟁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양극화가 심화될 때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이 망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픈 문제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잘 커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것 같은데 그 성과가 우리 국내에 국내 시장에 국내 산업 분야에 잘 고루 나누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하면 이것은 우리나라 시장시스템에 산업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잘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대기업은 대기업답게 중소기업을 배려도 하고 이런 질서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장에 독점 혹은 과점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면 그 존재자체로 이미 경쟁질서에 위협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 아빠의 존재자체가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무 말을 안 해도 그 존재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없어지라는 말이나 했더니 그러면 스스로 컨트롤을 잘 하십시오. 그런 이야기인데 대기업들이 자기 컨트롤을 잘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적어도 법질서를 위반해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은 지켜야할 최소한인데 그것도 안 지킨다면 국제적인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는, 국제적이 기업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대기업들이 자기 컨트롤을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질서와 관련해서도 이게 유럽식 컨셉인데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이 커서 미국에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이런 개념 자체가 생소한데 독일이나 유럽으로 가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면 다른 사업자들은 해도 좋을 일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컨셉이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4. 법제도 선진화 방안

■ 법제도 선진화와 출자총액제도 문제

법제도 선진화를 위해서 태스크 포스(Task Force)를 구성을 해서 운영할 생각인데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법제도 전반을 선진화시키겠다는 측면하고, 또 하나는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출자총액제도 (이하 출총제) 어떻게 하시겠냐는 질문입니다. 저는 출총제라는 말을 한 번도, 한 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질문이 자꾸 나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련해서 대규모 기업집단에 관한 시책을 전면적으로 재고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출총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출총제는 순환출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순환출자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출구를 막는 방법을 썼는데 대단히 거친 제도, 잘 다듬어지지 못한 제도, 목적과 수단에 정확성이 떨어지는 제도, 너무 무식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외를 만들어 놓아서 그 제도의 정합성이 있는지도 문제인데 다 예외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더 이상 이 제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게 아니냐는 생각에 저는 대안을 간구 하려고 하는데 기업에 있는 분들은 대안에는 관심이 없고 그 제도를 폐지할 거냐 말 거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 아무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안 중에 어떤 좋은 대안이 있을까 열심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식 제도, 영국식 제도, 일본식 제도 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고 우리 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공정거래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학교 선생을 오래하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나 공부 못하는 애들이나 열심히는 해요. 문제는 잘하는 사람은 중요한 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쪽에 집중을 잘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공정거래 위원회도 이제는 중요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생각입니다. 특히 고 집중산업들을 집중적으로 해보자, 그리고 지금까지 경쟁원리가 들어가지 않았던 규제 사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해보자는 계획입니다.

이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면 규제 역할을 시장이 대신 해준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규제완화는 '레세페르(laisser-faire: 자유방임주의)'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은 그 규제가 감당하던 역할을 다시 시장이 해주게 되어야 하는데 시장은 아직 기능하지 않는데 규제는 자꾸 완화하면 규율이 시장질서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열심히 보려고 합니다.

법 집행이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카르텔 같으면 점점 카르텔이 옛날에 버젓이 카르텔하고 계약서 쓰고 계약서 하나씩 보관하고 있으니 그것을 찾아오면 증거가 됐는데 지금은 증거를 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가 전부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없이는 적발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시장 지배적 사업자 같은 경우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인지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보려면 어떤 경제 분석도 해야 하고 법리적인 엄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경제분석 전문가도 아직 부족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할 역량도 아직 부족하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 법률적 전문성을 높여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경쟁 제한적 제도와 관행 타파

경쟁 제한적인 제도나 관행 하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외국에 가서는 점잖게 쉐틀맨으로 행세하다가 집에 오면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우리의 기업현실이나 공무원들의 근무 현장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달에 국제경쟁네트워크(ICN: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총회를 가느라 남아프리카에 다녀왔는데 토요일에 출발을 하는데 우리 간부들이 공항을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나오느냐, 내가 길을 모르냐, 힘이 없어서 짐을 못드냐. 도대체 왜 오냐?” 했더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지 말라고 했더니 그 전날 퇴근을 하는데 부위원장님이 와서 우리 간부들이 그래도 되나 상당히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나오는 사람들은 체크하겠다고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 나왔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토요일 날 모처럼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쉬어야 하는데 위원장이 간다는데 누가 나오고 싶겠어요. 아무도 안 나오고 싶은데 딱 사람 다 나오는데 나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서로 안 나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촌스럽게 그러지 말아라, 그런 것 좀 이제는 없애자 옛날처럼 외국 한번 가기 어려울 때 외국 한번 가면 사돈에 팔촌 다 나가서 환송하는 이런 것 좀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기업현실에 우리 공무원 근무 현장에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줄여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선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들 중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아닌 것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보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상당히 기초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 소비자 보호 업무

소비자 보호 업무가 법개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법사 위원회에 걸려서 있는데 통과가 되면 소비자보호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옵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비자보호가 보호적 차원이었습니다. 피해가 생기면 구제해주고 정보 제공하고 이렇게 했는데 소비자보호가 이제 보호적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비자가 시장에 주체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게 소비자가 주권자로 제 기능을 하게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쟁질서와 소비자정책 관계가 유기적으로 보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족한 정보제공이나 안전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만 소비자보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자는 것입니다.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가 가장 좋은 벗은 경쟁이다, 경쟁질서가 확립이 되어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소비자 질을 높이되 소비자가 정보의 문제에서 비대칭성이 있을 거니까 정보제공을 열심히 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소비자들이 됨으로써 시장에서 감시자의 역할을 잘 해내는 이런 소비자 보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제가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혹은 논술위원들이 “위원장님 그러시다 정부에서 왕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런 걱정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닐 겁니다.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은 아직 제 이야기에 동조하는 분들보다는 아닌 분들이 많을지 모르는 걱정이라고 생각되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면 제가 덜 외롭게 일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문정숙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아침에 일찍 나와서 평소 존경하던 권위원장님을 뵙고 말씀을 들으니깐 역시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상 저희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자주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나누기도 했고 그래서 위원장님의 말씀이 낯설거나 그런 얘기는 아닌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소비자정책하면 소비자를 왜 보호해야 되는 건지 경제학자간에는 소비자 보호할 필요가 없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기업과 소비자인데 소비자들도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소비자보호를 너무 많이 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간에 논쟁을 거치고 나서 지금은 상당부분 국제경제의 발전이나 국가경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과 소비자가 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정책, 소비자에 대해서는 소비자정책을 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는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따로 각각 생각했지만 지금은 경쟁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똑똑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소비자가 시장에 많이 있어야 경쟁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소비자정책이 함께 수반 되어야한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친기업적이고 친경쟁적이고 친시장적이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법과 제도의 선진화를 말씀 하셨는데 아무리 법과 제도의 선진화를 끌어간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비효율적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올라간 지 꽤 오래 됐는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보호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되는 문제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쟁만 있고 아직도 결정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실히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를 갔더니 핵심부처에 변호사가 반이

있고 경제학자나 소비자 경제학자가 반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서 아까 전문가도 말씀을 하셨지만 법학이나 경제학이나 소비자경제학 전문가들에 대한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제도적 준비는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장자체가 글로벌마켓이 형성이 되고요.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소비자에게 정보가 점차 많이 갖게 되는 기회가 높다 보니까 정보화에 의해서 시장에서 힘이 기업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점차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가 소비자에게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정보가 가고 있고 소비자에게 힘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글로벌마켓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지구적인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글로벌 스탠더드의 또 다른 법과 제도에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공정위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에 대한 거라든지 국제 거래관계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더드의 준비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MN의 문제에 있어서나 여기에 적용하는 문제 같은 것도 많이들 연구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정 토론하는 것은 가능한 미시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고 김종석 교수님이랑 저랑 다 규제위원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김종석 교수님께 넘기고 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홍익대학교 교수) 오늘 권위원장님 말씀 관심 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학계에 계시면서 법학계, 경제학계, 공정거래 분야에서 높은 학식과 인품으로 많은 동료와 후배들의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규제

개혁에 관한 전문성이나 관심이 그동안 권오승 교수님의 격려와 지도에 힘입은 바가 큼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위원장님은 굉장히 온화하시고 합리적이시고 그런 분으로 알고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셨을 때 많은 분들이 위원장님이 어떤 분이냐는 궁금증을 말씀하셨을 때 그런 요지로 말씀을 드렸습니 다만 일부에서는 위원장님을 잘 아는 분들이 외유내강이신 분이다. 속에는 굉장히 무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실지 모른다는 근거 없는 루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취임하신 지 두 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계와 재계에서는 위원장님이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있고 어떤 추진력과 어떤 리더십을 보이실 것에 대한 궁금증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언론과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을 불러 모을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역시 위원장님의 노련한 말씀으로 이 궁금증은 재계와 학계에서 계속 유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두 가지 토론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으로 저에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에 굉장히 개인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동안 경제 검찰로 불리 우면서 하나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특성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검찰, 경찰, 국세청과 함께 무슨 사정기관처럼 여겨지는데 대해서 저로서는 공정거래제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부처이어야 하고 전문성과 경제전체를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위원장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서와 연설을 통해서 경쟁문화와 원리와 확산, 정착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몇 년 동안 보인 성과를 보면 예를 들면 전력산업구조개편이나 휴대 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일몰(자동폐기) 조항 연장이라든가 경쟁 제한적 정부규제의 완화과정에 민감한 이슈라든가 이런데 있어서 경쟁옹호 주창자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당히 현실논리와 다른 경제의

적 논리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사에 대한 어떤 규제의 속성이 있는 시책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때는 정치적인 이슈에도 말려 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공정거래제도를 관심 있게 보고 애정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걱정을 끼치고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도 말씀 중에 경쟁정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경쟁정책이라고 하면 대체로 정책 재량권을 가진 규제적 속성을 띄게 됩니다. 사실 경쟁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질서 있어야 합니다.

질서는 룰입니다. 그래서 항상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공정거래제도를 정부의 규제의 일부로 보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저는 일반적인 공정거래제도는 규제가 아니다, 이견 규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쟁정책차원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제도를 규제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출자총액규제와 같은 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정거래정책이나 규제보다는 공정거래질서, 경쟁질서의 확립 쪽으로 정책비중이 옮겨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정책과 경쟁질서라는 어휘의 선택에서 오는 판단의 오류가 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공정거래제도라는 공정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일반의 오해, 심지어는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서도 공정과 공평을 혼동하는 선택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경쟁을 전쟁으로 보고 갈등으로 오해하는 것처럼 공정이라는 것도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것처럼 일반에게 인식되고 있고 특히 현 정부의 정치적 관심과 노선 방향이 대체로 균형 발전, 양극화 해소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 기능보다는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방식을 선호해 왔던 것으로 볼 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작동을 하고 시장의 영역이 넓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일부분야에서는 시장의 영역이 좁아지고 정부가 직접 자원배분에 개입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과연 이러한 정책 환경 하에서 공정거래 확산과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한 시장 영역의 확산, 확대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칫 이것이 오순도순 잘 살아 보지는 요지로 그래서 대기업의 자발적인 배려를 요구하는 자발을 요구하는 암묵적인 강요가 우리나라의 기업계나 공정거래위원회나 정부주도로 도입이 된다면 자칫 바람직하지 않은 도덕적 회의를 발생할 수도 있고 경쟁정책에 기본 원칙과도 상당히 상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위원장님께서 불식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말이면 시장개혁 로드맵 3년 기간이 끝나고 이 후 내년부터 포스트 로드맵이 시작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학계와 재계의 인사들이 과연 포스트 로드맵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건지 그래서 특히 위원장님의 어떤 복안(腹案)과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입장을 보류하시면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태스크 포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편향된 시각과 코드 중심의 인사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상당히 우려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이었었는데 오늘 이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구성된 태스크 포스의 인적구성이 아주 균형 잡히고 전문성이 존중된 태스크 포스가 구성된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이 시장경쟁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 포스의 권고안이 어떻게 나올지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은 위원장님께서 고 집중산업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집중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고 집중산업은 한결같이 통신이나 에너지나 이런 산업과 같이 각 정부 부처에 독립규제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시화 되고 있 다시피 통신산업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위원회의 두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는 애로를 표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의 중복과 상충의 발생에 가능성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정보통신 사업자들, 에너지사업, 방송분야, 금융분야 다 독립규제위원회가 있는데 이 분야에서의 경쟁 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는 두 개의 규제기관이고 중복 규제이고 규제비용의 증가도 의미하지만 또 정부 부서의 역할로 불가피 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으리라고 예상해서 위원장님께 이 자리에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제가 20분 얘기를 했는데 10분 동안 말씀하시면서 제가 얘기했던 것 다 터치하시고 또 안 한 것까지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말씀에 내용 중에서 아직도 권오승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게 불투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무 솔직해서 우리 직원들이 걱정을 하는데 그렇게 순수하고 솔직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걱정을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투명하게 말 못한 것이 있는가 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얘기가 앞으로 제가 할 방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언론 쪽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제가 쓴 글 중에 재벌정책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니까 이걸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게 적절하냐 이렇게 썼던 글이 있고요. 또 어떤 글에서는 재벌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좀 더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것을 읽은 사람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벌정책을 안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뒤에 것 읽은 사람들은 감성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전혀 충돌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벌문제가 소유의 문제, 소유 집중의 문제, 일반 집중의 문제, 시장 집중의 문제 또 소유 집중으로부터 나오는 지배구조의 문제, 경영의 불투명상의 문제 이런 문제가 관련이 되면 이게 어떻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다 합니까. 예를 들면 조세 문제는 국세청이 해야 하고 금융문제라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관련 부서들이 다 있고 법 위반하는 탈법이라면 검찰청이 해야 될 것이고 한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 그 문제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부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위 대기업집단 문제를 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기 힘든 문제까지 언급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지배구조가 어떻게, 지주회사로 가거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사실인데 그 때는 그게 필요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능하면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하자. 그래서 개별시장을 보고 그 시장에 독점, 과점사업자가 단독일 때와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일 경우를 어떻게 같이 봐야 할 것이냐 달리 봐야 되느냐 이것이 도저히 고리를 놔두고는 개별시장에서 경쟁이 안 되겠다 싶으면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저는 하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시장을 중심으로 보고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쪽으로 가보겠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구요.

또 하나는 아무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집행하는 부서이지만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검찰이라고 하는 말에는 불만이 있습니다. 경제검찰만이 아니고 경제법원 역할도 해요. 1심 법원의 역할도 합니다. 거기에 경쟁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정책 부서이기도 해요.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소비자보호 역할도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능 중에서 검찰 쪽 기능만 강조해서 경제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법무부에는 맞는 거지만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적합한 표현이 아닌데 이상하게 경제검찰이라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전문가들은 그런 표현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델이 독일식 모델을 가져왔기 때문에 조사해서 이게 전문성이 있는 거니까 제소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조사해서 1심에서 판단까지를 한다고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기능과 법원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법 집행 기능이 있고 또 한쪽은 정책기능이 있는데 저는 법 위반 기업을 적발해서 처벌하는 일들이 법 집행기능이 아니겠어요. 이것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저는 경쟁질서 확립이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열심히 하지만 기업인들이 우리 사회전체가 경쟁질서 하나는 바로잡아야 된다는 인식이 확립되어서 기업들이 스스로 경쟁질서 하나는 우리가 확실히 지키자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불편한 것들은 덜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법 집행은 엄격하게

하고 정책은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뒤섞여 버리면 안됩니다. 정책 하는 분들은 상당히 선한 의지로 하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하지만 모든 제도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도를 만들 때는 그 제도가 갖는 양면성을 반드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 집행은 엄격하게 법 해석도 엄격하게 하고 앞으로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지금 있는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구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혹시 불투명한 게 있으면 또 질문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불투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있겠죠. 자기 혼자 생각대로 다 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다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겠습니까 제가 있는 힘을 다 해서 하되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정치적 현실은 감당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집행이 과연 정치적 영향을 적게 받고 독립성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가 주문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건 제가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제가 임명장 받고 첫 번 대통령께 한 말이 뭐냐하면 와서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힘든 조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베풀 데가 있어야 하는데 베풀게 하나도 없어요. 지원하거나 그런 할 게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점도 규제, 재벌도 규제, 정부규제완화 하라고 해야 돼, 전부 어디 가서 부담 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 조직이니까 뭔가 정치적인 서포트를 받든지 시민들로부터 강한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데 시민들은 아직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하는데 인지도 모르고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서울법대 교수라는 것이 참 좋은 직업이었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교수가 정말 좋은 직업이었구나 매일 느낍니다. 다행이 저는 임기가 끝나면 바로 제 자리로 돌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임기 동안 별로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기가 보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기 후도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주어진 여건 내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해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부분이 저는 이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의 비판,

아까 두 교수님처럼 얘기를 하시면 기꺼이 받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면서 막 하면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인데 얼마 전에 논술위원들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깐 그러더라구요. 위원장님 멧집을 키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작은 비판에 움직이지 마시고 멧집을 키우시고 뚜벅뚜벅 가십시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가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84년, 1985년 독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가 있었는데 그 때 그 당시에 조직에 아주 사무직 말고 직원이 240명인데 정확하게 120명이 법률가고 정확하게 120명이 경제경영전문가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공정거래위원회 역사가 경제기획원에서부터 독립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경제 관료들 중심이지 법률가나 경제 분석 전문가들은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했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꾸준히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좋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철저히 제가 교육을 직접 담당하더라도 하려고 하는데 조심스러운 게 자기가 교수출신 아니라고 할까봐 저런다는 얘기를 조심하고는 있습니다만 내부적 전문성도 키울 것이고 부족하면 외부의 전문가도 모셔올 생각이요 여러분의 조언도 받아 들어서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법과 제도를 선진화하겠다는 말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겠다는 말이 되는데 자칫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메리칸 스탠더드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메리칸 스탠더드가 글로벌 스탠더드의 하나의 예이지 미국 스탠더드가 바로 글로벌 스탠더드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아니냐, 우리나라의 시장의 조건이 다르고 경제발전 정도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가장 맞으면서 합리적인, 비합리적인 요소가 제거가 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시아 문화권에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구해야 할 경쟁정책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시안 총회를 가보니까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G5 내지 G6 정도의 대접을 받아요. 일본보다 훨씬 대접을 받아요. 왜 그런

가 했더니 우리나라가 상당히 열심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활동도 상당히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인식을 했고 그것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한국의 경험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쪽에 기대가 상당히 있어서 그 부분도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기능과 정부기능 이쪽은 다 알고 계시고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더 보태겠습니까만 저는 아무리 시장경제가 중심이라고 해도 시장경제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기본적으로 시장이 기능을 해야 되지만 시장실패부분이 있고 시장실패부분은 정부가 다시 보완을 해야 되는데 특히 상생협력 같은 부분을 시장원리로 볼 수 있는 측면과 시장원리로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도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한 쪽에는 경쟁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과 하도급 거래를 공정화 시켜야 된다고나 소비자 보호를 해야 된다고나 양쪽 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과 공평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전에 우리나라는 공정이 너무 강조된 사회가 아니냐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특히 자유가 강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경쟁과 관련해서는 경쟁에 자유가 강조가 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인데 그 말보다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라고 해서 공정을 너무 강조한 것 아니냐 자유 없는 공정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경쟁의 자유 쪽에 무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아까 그런 정서적인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든지 우리 스스로도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 하니까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이것도 해달라고 하고 저것도 해달라고 하고 제가 음식 먹는 곳에 가서 제가 두 잔 정도 권하면 불공정하다고 하고 이런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하는 공정이란 것 참 어렵다 싶는데 저는 공정보다는 자유를 강조하는, 경제 자유를 제한하는 여러 요인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 할 수 있을까, 한꺼번에 하기 어렵다면 단계적으로라도 완화해 나가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경제 로드맵 이후에 포스트 로드맵을 만들려고 하고 그것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로드맵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로 되지 못하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가 왔을 때 극복해 나가는 것이 걱정인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좋은 로드맵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석연 변호사)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공정거래법이 경제헌법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경제헌법이 근거하고 있는 것이 우리 헌법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출총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헌법적 인식이 정확하게 하고 계신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환출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이지만 출구를 막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결여된 거친 제도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작년 초에 강철규 위원장님께서 출총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데 그 근거로 헌법 119조 2항을 들었고 헌법 학자한테 물었는데 그 규정이 확실한 근거조항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나름대로 반론을 여러 강연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119조 2항의 출총제가 근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119조 1항이 우리 경쟁질서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게 바로 자유경쟁질서에 대한 기본원칙입니다.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성장 발전을 위해서 공정한 거래질서 등등” 경제를 위해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썼어요. 예의적으로 기본질서를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정부의 시장개입이겠지요.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19조 1항, 2항은 원칙과 예외 조항입니다. 기본이념과 보충이념의 관계인데 119조 2항을 앞세우면 정부의 모든 시장개입이 다 정당화되는 것인데 그건 헌법상 예외 조항을 원칙 조항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이 헌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느끼고 있는데 출총제가 마치

119조 2항에 의해서 합리화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119조 2항을 원칙조항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이것이 독일 헌법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이지요.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출총제는 출구를 막았다. 막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투자를 많이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윤을 많이 내는 것이 기업이 존재이유란 말이에요. 출구를 막아놓는 것이 출총제에 관한 공정거래법 규정을 법률 형식으로 보면 완전히 입구를 막아놓고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집단 해가지고 어느 수준에서는 더 이상 일자리 창출을 못한다는 말이지요. 저는 이것이 출구를 막는 원칙적인 제한이기 때문에 헌법과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규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서는 출총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언론에 보니까 2년 내에 폐지된다 이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보완책을 만들고 나서 폐지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출구를 막았기 때문에 출구는 일단 터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산출되는 뭐가 잘못되었을 경우 내부를 수술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출총제는 폐지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내부를 수술하라는 말이지요. 그런 예외적인 조치로 가야 되기 때문에 헌법과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제경제적인 현실에서 볼 때도 현실적 타당성을 잃었기 때문에 바로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출구를 막을 것이 아니라 출구 내부에 들어가서 문제가 있으면 내부를 수술하는 이런 순서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적 차원에서 헌법에 어긋난다는 말을 했고 어느 특정 대기업하고 관련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공정거래제도라는 것이 헌법에 근거해서 경제헌법의 역할을 다 하려면 이런 제도부터 과감하게 상징적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석자) 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위원장님 철학의 뜻인가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확실한 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확실히 이용하겠다는 것하고 공정

이나 공평이라는 그런 문제보다는 경쟁이라는 데에 조금 무게를 두고 싶다는 말씀을 듣고 제 나름대로 확실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투명한 것이 없습니다. 사회자께서 총체적인 얘기만 하신다고 해서 저도 구체적인 것 한가지 물어본다면 출총제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제가 얘기를 주욱 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률가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법률가들이 제가 강의 할 때 공정거래가 뭐냐 질문을 하면 공정거래가 뭐라고 열심히 설명을 하려고 하면 저는 불공정하지 않은 거래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다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하지 않은 거래라고 하면 비난받을 요소가 없이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장난 같지만 법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어떻게 해라하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뭘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뭘 해라 하는 것은 정책이 하는 일이고 법은 뭘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훈련이 되어서 말하는 것 같은데 딱 잡히지 않는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률가 얘기는 정확하나 쓸모없는 얘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이 어떻게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이 갖는 반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뒤에 기자 분들도 있는데 제가 열심히 말을 해도 제가 말한 의도를 쓰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자꾸 쓰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조심스러워 가지고 내 뜻이 정확히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조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이석연 변호사님 말씀에 위원장이 아니라면 이론적으로 한번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위원장 입장에서 하는 것

이 옳을지.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강철규 위원장님은 법학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법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위원장님이 헌법 얘기를 하셨다면 그 법률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얘기를 하셨을 것이고 얼마만큼 그런 측면에서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고 저는 법을 하는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서 출총제든 제반경제관련규제가 갖는 헌법적 근거가 무엇이나 하면 119조 2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셨듯이 119조 1항은 우리 경제 질서의 기본을 선언한 것이고 2항에서는 기본이 시장경제이지만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시장경제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국가가 규제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부분 아닙니까? 그것이 잘 되어 있는지 입법적으로 따져 볼 측면이 있지만, 그런데 출총제도 헌법적 근거는 119조 2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것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이나 비례원칙에 합당하나 과잉규제가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다시 위헌 논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하고 위헌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위헌이 아니라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부당하다 할 수 있겠는데 위헌인지 여부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위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유지배 구조 문제 이쪽은 터치를 안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는 놔두고 경쟁 이것만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대규모 기업집단, 그리고 상위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에 이 소유지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경쟁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자신이 없습니다. 이 순환출자 고리를 끊지 않고 개별시장에서 경쟁제한적인 문제만 규제했을 때 실효성이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우리처럼 소유지배구조가 왜곡되어 있고 또 아주 작은 평균 4.95%라고 하는데 어떤 기업으로 가면 1%로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열회사를 통해서 전 기업 전체를 선단식으로 경영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그냥 놔두고 개별시장만 본다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자신이 없어서 한 번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원인적 규제, 사후적 규제만 했으면 좋겠는데 원인적 규제를 전혀 안 해도 좋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더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변호사님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밀히 검토하시는 분들은 제가 위원장이 되고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한쪽에서는 제가 경쟁 질서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는 털자 하는 쪽이, 우선 며칠 전에 이동통신사 무제한 정액요금제도 카르텔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하면서 종래에 그런 게 법 위반이라고 하면 과징금 부과하고 신문 공표하고 했는데 저는 신문 공표를 털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해왔는데 왜 갑자기 털니까? 털려면 뭔가 기준을 만들어서 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이 새로 왔는데 털자고 제가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이 신문 공표라고 하는 것은 이 제도를 일반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잘 모른다 그러니까 좀 알리자 하는 측면 그리고 거래 당사자들이 모르니까 시정명령을 해도 또 피해가 생길지 모르니까 알리자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공정거래 제도가 많이 인식이 되었고 또 언론에서도 과징금 부과했다고 언론에서 써 주는데 굳이 신문 공표 하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법 시행이 25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신문 공표 하라고 하겠느냐. 그렇게 안 해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 조금씩 필요하지 않은 것을 털어 나가는 일을 할 것입니다.

제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나타날 거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주회사 얘기를 하셨는데 지주회사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인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우리 법에 지주회사제도를 도입을 할 때 일본 것을 그냥 모델로 해서 오다보니까 우리나라는 지주회사도 없는데 지주회사설립제한 금지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가 또 대규모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와 거기서 생기는 경영의 불투명성, 경영의 책임에 소재의 불분명 이런 것 때문에 차라리 이것보다는 지주회사 시스템으로 가서 하면 조금 더 분명해지고 투명해지고 책임도 명확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지주회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잡한 출자구조 소유 지배 구조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난번 강위원장님이 그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권유도 하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지만 그 쪽으로 가라 소리는 안 할 생각입니다. 가든 말든 그건 기업 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기업 쪽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거고 다만 지주회사도 또한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지주회사도 자칫 잘 못하면 지금 있는 복잡한 구조를 합법화시켜 주는 제도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지주회사를 허용하되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지금 같이 복잡한 소유지배구조가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 완화됐으면 좋겠는데 그 대안이 될까 그 대안 중에 여러 대안들은 기업들이 찾고 저는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는 것만 선을 그어주는 최소한의 선을 그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업 하시는 분들은 지주회사 설립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빨리 털어 달라고 하는데 저는 어디까지 털어야 될지 모르는 게 앞으로도 그렇겠습니다만 기업에서 하시는 분들은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렵고 불편한 제도라도 국가적으로는 필요하다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요구 중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들어야 될 것과 듣지 않아야 되는 것, 국민들의 전체적인 질서라는 차원에서는 어차피 개별 기업입장에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무튼 잘 들겠습니다만 한번쯤 국민경제전체적차원에서 경쟁 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걸러 내는 작업. 이 작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합니다.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장) 역대 공정거래위원장님들의 출신을 보면 한 분만 경제학자이시고 나머지는 법학을 전공했거나 법과대학 출신으로 경제를 다루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때마다 시장에서는 그 분의 철학이나 가치관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했을 때 공정이라는 말 자체가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가치관의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

문입니다. 그 분의 가치가 세계적 가치관인가 국내적 가치관인가 또 법질서와 경제 살아있는 움직임의 시장질서법칙하고의 엄격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새로운 공정거래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깐 누구보다도 친시장원리자이며 시장경쟁원리를 신장하는데 앞장서시는 분이라고 해서 안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가운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가치관의 세계관적 또는 인생관적 개념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은지 안 같은지 하는 불확실한 면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의 선진화, 공정거래의 선진화를 정책 목표로 삼으셨는데 선진화는 지금의 우리 환경 속에서는 세계화 속에서의 선진화인데 공정의 기준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메리칸 스탠더드하고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화기준의 공정기준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집중에서 대기업이라고 했을 때 대기업의 규모가 어느 기준에서 세계화 속에서 대기업 수준인지 아니면 소규모 폐쇄 경제 속에서 조그만 경제 속에서의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의 경쟁질서인지 또 개방화가 되니까 이런 개념의 인식차이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외국 자원이 들어왔을 때 외국인과의 역차별문제에 관해서 공정거래 말씀은 분명히 하지 않아서 그로 인한 불공정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건지 궁금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 경제정책의 목표는 경쟁력 제고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 하느냐 하면 자유로운 경쟁을 하게 하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화 속에서 경쟁력을 있게 하려는 세계적 기업의 경영전략을 보시면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피티션(coopitition), 즉 협력(cooperation)과 경쟁(competition)의 결합을 통해서 경쟁력을 기른다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가 글로벌 아웃소싱입니다. 자기 위에 있는 가격이나 사람, 원자재를 글로벌 아웃소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인데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것이 국내적으로 얘기하는 공정질서에 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것과의 조화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은 주로 국내적인 문제에 얘기를 하셔서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역할이 소비자 보호도 말씀하셨지만 외국 선진국의 경우 주로 수평적 결합을 제약하는 것을 해지하는 카르텔 같은 것을 규제하거나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력 집중이나 대기업집단 소유문제에 대한 수직적 결합에 대한 통제 관리에 너무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또 기업집단의 소유 문제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투명화가 되고 상속이 되면 자연적으로 소유 집중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21세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지 그 얘기를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식 금융경제연구원 원장) 시장 경제에서 경쟁을 싫어하는 두 계층이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미 이긴 사람들. 그러니까 기득권층이겠죠. 기득권층은 경쟁이 싫죠. 그런데다 대규모 기업주들이라든지 노조 같은 경우는 노조 집행부라든지. 제가 하고 있는 금융파트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경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층은 경쟁만 하면 지는 계층. 실업자나 신용불량자나, 기업의 파산자든지 이런 두 계층은 경쟁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쟁에 낙오된 저해 계층에 대해서는 소외 계층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이 경쟁사회로 자꾸 들어오게 해야 되겠지만 기득권층에 대해서 주로 경쟁시장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공정거래법이라든지 특히 규제가 많은 사람들은 금융감독원에 포함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석 교수가 마지막 질문을 하셨는데 특별하게 답변을 하지 않아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융감독에 관한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금융감독에 관한 세 개의 목적이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 투명하고 질서 있는 시장, 소비자 보호입니다. 금융부분에서의 세 가지 목표와 지금 공정거래법에 나와 있는 공정거래에서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과는 굉장히 한 쪽은 포괄적이고 한 쪽은 상당히 구체적

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렇다면 목적이 비슷비슷한데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과의 세부적인 사항이 굉장히 많은 사이인데 앞으로 어떻게 위상을 적립하면서 어떻게 관계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만 중앙대학교 교수) 저는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매끈하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선 21세기 트렌드는 소비자 주권이나 소비자 절대주권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무조건 약하다는 인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이나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 저는 공정거래를 얘기하기 전에 반기업 정서, 이거는 굉장히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의 기를 완전히 빼놓고 있는데 기업의 기를 살리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실패,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은 기업보다도 정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가격 같은 경우 정책 변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얼마나 제약적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 잡기보다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유연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WTO체제 속에서도 우리가 보면 자유무역, 경제통합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똑같이 경쟁지수를 통해서 시장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효율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도 동시에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쭙어 보고 싶은 것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는 우리 반 기업정서를 갖다가 제고 할 수 있는 무력화는 아니겠습니까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 이런 곳에서 헌납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경제학자로서 한마디로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위 규모가 세계 경제20위인데 아직도 60년대 부정축재자 재벌그룹에서 돈 모아서 헌납하는 이걸 뭔가 우리 위상하고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아침에 잠도 깨신 것 같고 소화도 되셨는지 상당히 수위가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역대 공정거래 위원장이 법대 출신이다 하셨는데 법대 출신인 것하고 법학자하고는 구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학과를 나왔다는 것하고 경제학자하고 구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법학자하고 경쟁법학자하고도 구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오고 난 뒤에 대법원에 인사를 가야겠다고 했더니 공정거래위원장 역대위원장이 대법원에 인사를 간 전례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심사를 하면 법원에 가서 최종 판단을 받는데 법원에 협조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안 갔느냐 하고 제가 왔습니다. 갔더니 대법원장 이하 아주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역대 최초로 법학자가 위원장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도 하시고 축하도 해시고 해서 제가 그렇게 좋아만 하시지 마시고 선물을 주십사 했더니 무슨 선물을 바라냐고 하셔서 우리 공정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지만 법리적인 전문성이 약한데 부장 판사 둘만 파견해 주십사 해서 기본적인 승낙을 받았습니다. 부장판사 두 분을 모셔오려고 하는데 7월 달 정기인사 때 오실 거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오실 건데 왜냐하면 공정위 직원들이 잘하는데 마지막 법리적인 검토가 약해 가지고 잘 했는데 법원에 가서 깨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잘못해서 깨지면 모르겠는데 잘 했는데 마지막 이 법리적 정제를 잘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처음부터 조사 때부터 수사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익혀두면 좀 더 잘 할 수 있었을 걸 하는 생각이 들고 자신이 있으면 여유 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고압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 보완을 받을 생각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경제전문가 중에서 우리나라 산업조직론 제대로 하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큰 사건 있으면 경제분석을 해서 경제학자의 도움을 받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보는 것은 경제학자들은 모델 써서 털어 내면 껌뻍 죽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어떤 모델을 썼느냐 그 모델을 제대로 적용을 해서 분석을 했느냐 이걸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 법적, 경제적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십시오. 가치관을 말씀하셨는데 저보고 이런 말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세계관은 상당히 진보적인데

윤리관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제 제자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한마디로 이렇다 저렇다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나라가 너무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시키려는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 두 번 봤는데 위원장의 가치관을 다 아시겠습니까? 다 아시려고 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사실은 말보다는 앞으로 구체적 사건을 처리하고 구체적 정책을 집행하는데 어떤 입장으로 가는지 지켜봐 주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은 법질서, 법에 대해서는 아는 것 같은데 경제현실을 내가 아느냐는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 제가 가장 약한 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듣는 것은 열심히 들을 생각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국가적 차원에서 걸러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질서적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증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진화와 관련해서 세계화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세계화를 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국경이 없는 경쟁에 우리가 노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국내 시장이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원재료 산업이라든지 분야에 따라서는 국내 산업으로 한정할 수 없는 국제적 시장을 봐야 될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쟁력은 국내 시장이 경쟁적이어야 국제적인 경쟁력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까지 국내 시장경쟁을 통하지 않고 정부지원이나 이런 것을 국제적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온 몇몇 챔피언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성과가 국내에 제대로 전달이 되려면 저는 국내시장이 경쟁력이 되어야 한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자칫 국내적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장 경제는 국내시장이 기본이다 그리고 그것이 국내시장이 점점 국경 없이 경쟁되어 나갈 때 넓게 보는 것은 좋으나 무조건 국제시장을 보자고 하는 것은 잘 나가는 기업에게만 유리하게 해 달라하고 오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쟁력 제고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저는 여러 가지 전략적 차원에서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현안 문제이고 다급한 측면이 있더라도 여전히 국내에서 경쟁적인 구조와 형

태를 고려해야 된다고 특히 대기업 쪽에 부탁하고 싶고 저는 대기업이라는 얘기를 거의 안 쓸 겁니다. 대규모 기업집단은 쓰지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그건 결국 국 상생 쪽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고 경쟁적 관점에서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그것은 관심이 아니고 독점이나 아니냐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또 외국인과 역차별문제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텐데 최근에 보면 외국인이라고 해서 엄격하게 대우해도 안 되고 국내기업이 외국인 기업보다 역차별 받아도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규모 기업집단과 관련해서 보면 역차별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사전적 규제는 줄이고 사후적 규제로 가면 역 차별도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쟁은 경쟁에 이긴 기업도 싫어하고 경쟁력이 없는 계층도 싫어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경쟁은 다 싫어하겠죠. 그런데 철학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는 계층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경쟁을 통해서 독점이 됐을 때 그 독점을 그냥 둘 것이냐 규제할 것이냐 여기서 철학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 경쟁을 통해서 형성된 독점과 비경쟁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독점을 같이 대우할 것이냐 달리 대우할 것이냐 하는 문제의 논쟁이 있습니다만 독점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개발에 노력이 부족하고 소위 소비자 독재에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독점적 지위에 올랐을 때 그 지위를 남용하지 않게 하자하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왔던지 간에 독점적 지위에 올라간 기업은 그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융, 통신, 방송, 에너지 하면 각각 규제 당국이 있을 텐데 규제당국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이 관심을 갖다보면 법 적용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중 규제를 받게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서로 다른 입장의 규제를 받으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것이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심을 가지려고 하냐하면 금융당국은 어쩔 수 없이 금융에 공정경쟁이라고 합니다만 공정은 얘기하는데 자유경쟁 쪽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깨끗하고 질서 있는 시장이라고 합니다만 그게 경쟁질서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보는 것은 아무

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선진국의 예를 봤더니 독일에서 봤는데 이 사람들이 참 잘한다 싶었어요. 통신시장을 놓고 보니까 통신시장을 어디까지 관련시장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떤 사업자가 지배적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기준이거든요. 이걸 보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고 그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것은 경쟁적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관점, 산업적 관점을 다 봐야 하니까 이것은 지위 남용인지 아닌지를 볼 때는 규제당국하고 경쟁당국이 모여서 양측 측면을 같이 보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고 네가 해라 이게 아니고 들어가서 각자 잘 하는 분야를 보고 마지막에는 협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규제산업분야를 하겠다고 하니까 규제당국들은 상당히 방어자세로 저 친구가 왜 저러냐는 느낌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열심히 하다보면 경쟁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보고 산업적 관점, 기술적 관점은 그쪽에서 봐서 서로 잘 협의를 하면 조금 더 높은 차원에 질서를 형성해 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빨리 되어서 기업한테 부담을 적게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과정에서는 다소 과도기적인 게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참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참겠다 싶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반 기업정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걱정입니다. 반 기업정서가 왜 생기는 것이냐 반 기업정서가 정부의 잘못으로 생기는 측면도 있고 언론의 잘못으로 생기는 측면도 있지만 기업의 잘못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기업이 도대체 기본적인 법도 안 지킨다는 현상이 반 기업정서를 부추기는 측면이 상당히 있었지 않나 그 점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현대자동차 같은 사건들이 검찰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반 기업정서가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여전히 있다는 얘기죠. 국제적인 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아직도 기본적인 법도 안 지킨다. 이런 것이 반 기업정서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특히 IMF를 거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아픔이나 그

런 부분에서 얼마큼 깊이 생각 했던가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 반 기업정서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업도 노력하고 정부도 노력하고 언론도 같이 노력해 줘야 되지 이것을 마치 기업은 아무잘못이 없는데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는 기업 CEO들을 많이 만나려고요. 직원들 만나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CEO들이 적어도 경쟁질서들은 지키자 이 법질서를 이제는 정착하게 하자 이렇게 결단을 해주고 같이 협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어느 나라든 경쟁 질서를 헤치는 대표적인 주범은 정부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정부가 경쟁 질서를 헤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경쟁주창기능 중에서 규제 당국도 얘기를 합니다만 정치권에서 경쟁질서가 우리나라 기본 질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도와줘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공정위가 공격받고 있는 것 중에서 아파트 값 담합 때문에 부녀회가 막 그러고 있는데 공정위가 뭐하고 있느냐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공정위가 뭐하고 있느냐 그런데 저는 못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비난을 받아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안 해야지 그런 것 저런 것 다 한다고 나서서 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이 쪽 저 쪽 끌려 다닐 게 아닌가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신문이니 방송이니 하는 것들이 공공성을 갖고 공익성을 갖고 문화 산업으로 언론 산업으로 특성은 있지만 산업이라는 점 그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측면이다. 산업으로서 경쟁 질서를 경쟁원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은 우리가 또 받아드려야 될게 아닌가 합니다. HRI

정리 및 교열

이해정 연구원 (hjlee@hri.co.kr) ☎ 02-3669-4024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P)	2006(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8.5	3.8	7.0	3.1	4.7	4.0	4.5
	최종소비지출 (%)	7.1	4.9	7.6	-0.3	0.4	3.4	4.0
	민간소비 (%)	8.4	4.9	7.9	-1.2	-0.3	3.2	4.0
	총고정자본형성 (%)	12.2	-0.2	6.6	4.0	2.1	2.3	3.1
	건설투자 (%)	-0.7	6.0	5.3	7.9	1.1	0.4	1.5
	설비투자 (%)	33.6	-9.0	7.5	-1.2	3.8	5.1	5.5
대 외 거 래 기 준	경상수지(억 \$)	122	80	54	119	282	166	50
	통 관 기 준							
	무역수지(억 \$)	118	93	103	150	294	232	80
	수출(억 \$)	1,723	1,504	1,625	1,938	2,538	2,844	3,120
	증가율 (%)	(19.9)	(-12.7)	(8.0)	(19.3)	(31.0)	(12.0)	(9.7)
	수입(억 \$)	1,605	1,411	1,521	1,788	2,245	2,612	3,040
증가율 (%)	(34.0)	(-12.1)	(7.8)	(17.6)	(25.5)	(16.4)	(16.4)	
기 타	소비자물가(평균, %)	2.3	4.1	2.7	3.6	3.6	2.7	3.2
	실업률 (%)	4.1	3.8	3.1	3.4	3.7	3.7	3.5
금 융	원/\$ 환율(평균, 원)	1,131	1,291	1,253	1,192	1,145	1,024	940
	국고채금리(평균, %)	8.3	5.7	5.8	4.6	4.1	4.3	4.6